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1197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김승원·김경만·김교흥

김진표 · 박광온 · 박재호

서삼석 · 양정숙 · 유정주

이장섭 · 임호선 · 전용기

전재수 · 정청래 · 한병도

황운하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·협력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진행되어 온 문화·관광·보건의료·체육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.

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(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"문화, 관광, 보건의료, 체육, 학술, 경제"를 "환경, 경제, 학술, 과학기술, 정보통신, 문화, 체육, 관광, 보건의료, 방역, 교통, 농림축산, 해양수산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18명"을 "2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3명"을 "7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협력사업"이란 남한과 북한	4
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	
다)이 공동으로 하는 <u>문화,</u>	<u>환경,</u>
관광, 보건의료, 체육, 학술,	경제, 학술, 과학기술, 정보통
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	신, 문화, 체육, 관광, 보건의
말한다.	료, 방역, 교통, 농림축산, 해
	<u>양수산</u>
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	제5조(협의회의 구성) ①
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8명</u>	<u>25명</u>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③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	
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	
다. 이 경우 위원 중 <u>3명</u> 이상	<u>7명</u>
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	
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